

신한BNPP퇴직연금POP펀드셀렉션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해외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가능 신용등급 기준 기재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해외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가능 신용등급 기준 기재 : 제17조 (투자대상자산 등)	제17조 (투자대상자산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한다. 3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(다만, <u>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</u>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	제17조 (투자대상자산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한다. 3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(다만, <u>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</u>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
1. 해외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가능 신용등급 기준 기재 : 제17조 (투자대상자산 등)	5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,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- 이상인 것에 한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(다만,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<u>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</u>)(이하 “어음 등”이라 한다)	5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,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- 이상인 것에 한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(다만,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<u>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</u>)(이하 “어음 등”이라 한다)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해외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가능 신용등급 기준 기재
-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해외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가능 신용등급 기준 기재 : 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3. 채권 -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(다만, <u>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</u>)	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3. 채권 -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(다만,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<u>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</u>)

1. 해외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가능 신용등급 기준 기재 : 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5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,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- 이상인 것에 한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(다만,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<u>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</u>)	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5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,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- 이상인 것에 한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(다만,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<u>금융감독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</u>)
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<u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3월 31일)</u>
3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- <u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3월 31일)</u>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<u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3월 31일)</u>